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172
건명	공정무역 전시·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안자	성북구청장
제안년월일	2016년 3월 21일
심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결결과	2016년 3월 30일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년월일	2016년 3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6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정무역 전시·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무역 사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공정무역 전시·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72
----------	-----

제출년월일 : 2016. 0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정무역 전시·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무역 사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건물명 : 공정무역 전시·홍보관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85-102
- 규 모 : 대지 108.3㎡, 연면적 67.37㎡(지상2층)
- 시설 내용

층 별	면적(㎡)	주요시설	비고
1층	37.77	워크숍, 모임방, 교육장, 간이주방	
2층	29.60	공정무역 제품 전시 및 판매장, 피팅룸, 창고	

※ 대상시설은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16년 3월 준공 예정임

나.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위탁방법 :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라. 위탁사업의 범위 : 공정무역 전시·홍보관 운영 및 시설관리

마. 별 첨 : 공정무역 전시·홍보관 건축 추진 현황 1부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이하 "공정무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③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